검 토 보 고 서

의안 번호	제43호

2020. 5. 18.

건 명	논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	
제안 및 제출자	이계천 의원 외 5명	제안연월일	2020. 5. 8.
소 관 위 원 회	산업건설위원회	회부연월일	2020. 5. 8.

보 고 내 용

□ 제안이유

○ 논산시 액화석유가스판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같은 읍·면·동에 이전 시 사업소부지에 접하는 한면이 폭 8m이상의 도로에서 폭 6m이상의 도로로 완화하여 영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○ 주요내용은 [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] 등(제4조)을 한면이 폭 8m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하며,

○ 당해 도로는 사업소 진·출입에 사용되어야 한다. 단, 사업소 진출입에 사용되는 도로는 공부상 도로이면서 현재 이용되어야 한다를

○ 상기조항 단서를 “다만, 기존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을 영위한 자가 그 소재지 읍면동에 이전 하고자하는 경우 사업소 부지의 그 한면이 폭6m이상의 도로에 접하여도 가능하며, 사업소 진·출입에 사용되는 도로는 공부상 도로이며 현재 이용되어야 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

□ 검토의견

○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 및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5조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됨.